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72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이춘석・이학영・안호영

정준호 • 이연희 • 이원택

윤종군 • 신영대 • 김윤덕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 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맹견"을 "맹견 또는 반려동물"로 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벌칙) ①・② (생 략)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신 설></u>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여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u> </u>		
<u>1.</u> (생 략)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1		
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u>맹</u>		
(<u>맹견</u> 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	<u> 견 또는 반려동물</u>		
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